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 수단인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
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
황입니다. 또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을 위해 평가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어려움이 있
는 실정입니다.

-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첫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지원내용, 선정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둘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
상설로 설치하도록 하며,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안 제20조).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내수경기 회복과 시

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가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